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홍성룡 의원(찬성자 23명)

나. 의안번호 : 제 331호

다. 발의일자 : 2019. 1. 23

라. 회부일자 : 2019. 1. 31

## 2. 제안이유

소방현장에서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 시민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다.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보호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구비토록 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토록 함. (안 제5조)
- 라.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심신 안정실, 감염관리실, 전용세탁실, 체력단련실,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서울형 소방병원을 지정·운영토록하고 이를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함. (안 제6조)
- 마.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토록 함. (안 제7조)
- 바.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심신 회복팀을 운용토록 함. (안 제8조)
- 사.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의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비용추계 등의 자료 : 원안참조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사고 및 재난현장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가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소방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하고 이를 통해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
- 참고로, 송아량 의원이 2019.1.9.일 동일한 취지로 의안번호 제 317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본 홍성룡 의원안(의안번호 제331호)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표 1] 의안번호317호와 의안번호 331호 관련 제정안 비교표

의안번호317호 (송아량의원 안)		의안번호331호 (홍성룡의원 안)		비고
안 제1조	목적	안 제1조	목적	내용 일치
안 제2조	정의	안 제2조	정의	안 317호에 소방공무원, 소방업무 등의 정의 추가
안 제3조	책무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내용 일치
안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내용 일치
안 제5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안 제331호는 계획수립 규정 없음
안 제6조	실태조사	안 제6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안 제331호는 실태조사 규정 없음

안 제7조	소방활동 보건 관리	안 제7조	직장어린이집 운영	안 제317호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없음
안 제8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안 제8조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안 317호는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규정 없음
안 제9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안 제9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내용 일치
안 제10조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의 보조			안 제331호는 제6조에 소방협력병원으로 규정
안 제11조	시행규칙			안 제331호는 시행규칙 없음

## ■ 서울시 현황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 현황을 보면,

- ‘심신안정실’은 2012년~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되어 전 소방서(안전센터포함) 117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감염관리실 및 전용세탁실’은 2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총 43개소가 설치<sup>1)</sup>되었음.
- ‘체력단련시설’은 전 소방서 및 안전센터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거나 면적이 협소하여 장기적인 보강 및 개선 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는 실정임.
-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은 소방관서 내에 소방차량 출동 및 점검 시에 배출되는 매연을 외부로 배출시키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2017년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등 3개소<sup>2)</sup>에 시범 설치해 효과성이

1) 종로, 용산, 도봉, 강북, 성동은 1개소씩 설치, 나머지는 2개소씩 설치

2) - 2017년(추경 2억원 편성, 3개소 시범사업) → 2018년(효과성 분석)

입증되어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

- ‘119안심협력병원’은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서울백병원 총 4개소를 지정·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은평성모병원을 추가 지정해 총 5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은 대응2단계 이상 발령 또는 장시간 대응이 필요한 재난현장 등에 현장활동 대원들의 탈진방지 및 피로누적의 단기적 해소를 위하여 2016년부터 전문의료진을 포함한 심신회복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고,
- ‘직장어린이집’은 2019년부터 용산소방서와 소방행정타운 2개소에 시범설치 계획이 추진 중에 있음.

[표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현황

연번	지원제도	현황																		
1	심신안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2012 ~ 2017 (6년간 순차적으로 설치 완료)</li> <li>○ 소요예산 : 금2,508백만원</li> <li>○ 설치현황 : 소방서 및 안전센터 전체설치(117개소, 소방재난본부 포함)</li> </ul>																		
2	감염관리실 전용세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관리실 설치현황 : 서울소방 43개소 운영중</li> <li>- 유지관리비 : 51,600천원/연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li> <li>○ 전용세탁실 : 전 감염관리실에 구급관련 오염물질 세탁실 별도운영</li> <li>○ 전용세탁기 : 방화복 전용세탁기 전 소방서 및 안전센터 운영중</li> <li>※ 보유기준(소방장비 관리규칙 제16조 별표2), 보급률 : 100%</li> </ul>																		
3	체력단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소방서 및 센터 확보 완료</li> <li>- 체력훈련장 기준 면적 미달 [ 종로소방서 등 10개소(42%) 신교119안전센터 등 43개 센터(46%)</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체력훈련장</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최대면적</th> <th>최소면적</th> <th>평균면적</th> </tr> </thead> <tbody> <tr> <td>소방서별</td> <td>강북소방서 211.3㎡</td> <td>강남소방서 58.3㎡</td> <td>83.8㎡</td> <td></td> </tr> <tr> <td>119안전센터별</td> <td>송파소방서 가락센터 139.9㎡</td> <td>강서소방서 화곡센터 6.6㎡</td> <td>44.3㎡</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체력훈련장			비고	최대면적	최소면적	평균면적	소방서별	강북소방서 211.3㎡	강남소방서 58.3㎡	83.8㎡		119안전센터별	송파소방서 가락센터 139.9㎡	강서소방서 화곡센터 6.6㎡	44.3㎡	
구분	체력훈련장			비고																
	최대면적	최소면적	평균면적																	
소방서별	강북소방서 211.3㎡	강남소방서 58.3㎡	83.8㎡																	
119안전센터별	송파소방서 가락센터 139.9㎡	강서소방서 화곡센터 6.6㎡	44.3㎡																	
4	배기가스 배출시스템	○ 2017년 영등포 소방서 현장대응단 등 3개소를 시범설치한 후 2018년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 2017년 : 영등포(현장대응단 10대), 서대문(홍은 3대), 동대문(휘경 3대)

연번	지원제도	현 황
		○ 금년에는 차고 면적대비 개구부가 작아 환기율이 낮은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에 우선 설치할 계획임
5	소방협력병원	○ 협력병원 : 4개소(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강남분원, 서울백병원) ○ 운영내용 : 전문진료, PTSD 집중관리, 구급대원 실습교육, 직무환경 연구 등 ○ 시 행 일 : 2018. 1. 1.(예산 : 188,471천원) ※ 2019년 398,400천원 ○ 이용현황('18. 1월~12월) : 인원 3,233명, 예산지출 252,501,370원
6	이동식 심신회복실	○ 운영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현장 심신회복차량</li> <li>❖ 제 원 : 전장(12,040)×전폭(2,490)×전고(3,450)</li> <li>❖ 승차정원 : 45인승 버스 개조 ⇒ 30명(1회 휴식가능정원)</li> <li>❖ 비치물품 : 냉장고, 전자레인지, 구급약품, 자외선 소독기 등</li> </ul> ○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의료진을 포함한 심신회복팀 운영(운영4, 운전1, 의사1)</li> <li>- 대응2단계 이상 발령 또는 장시간 대응이 필요한 재난현장 출동</li> <li>- 호서기 및 호한기 또는 재난현장지휘관 요청 시 출동</li> <li>- 현장활동 대원에 대한 휴식, 식사, 의료서비스 등 제공</li> </ul>
7	직장어린이집	○ 2019년부터 용산소방서, 소방행정타운 2개소에 시범설치계획 추진 중임.

## ■ 주요골자별 의견

### 가. 목적 (안 제1조)

- 안 제1조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는, ‘소방활동’, ‘소방활동재해’, ‘소방관서’, ‘복지시설’, ‘이동식 심신회복실’ 등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소방활동’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3)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 ‘소방활동재해’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음으로, ‘복지시설’은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운영하는 소방관서 매점, 식당, 수련원, 보육시설 등을, ‘이동식 심신회복실’은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사용되는 이동식 차량으로 정의 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본 조례안을 이해하기에 적절하게 용어정의를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3)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에게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4)에서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건강장애 예방, 부상 및 질병 치료와 생활안정 등에 관해 적극 노력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함.

## 라.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토록 하고 있음.

제5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장비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이 공기호흡기 등 11종 66,392점인데 비해, 현 보유현황(2019.02월 기준)은 11종 90,267점으로 보유기준 대비 보유율이 136%이고 노후율은 0%<sup>5)</sup>를 유지하고 있음.
-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경우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매년 보유율과 노후율이 변동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제5조의 규정은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인보호장비 보유율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안 제6조)

- 안 제6조는, 시장에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을 위해 보건안전시설(제1항),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제2항), 체력단력실(제3항),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제4항)을 설치·운영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이들 시설 중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이미 대부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 역시 앞서 서울시 현황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등 3개소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5) ○ 보유기준 : 최소 지급기준으로 정비 및 교체 사용 등을 위하여 지급기준의 20% 이상 보유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제4조)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16년부터 노후율 0%를 유지하고 있음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해당시설이나 해당사업의 원활한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제5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서울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 역시 현재 서울시가 보라매병원 등 4개소를 지정·운영 중에 있어 본 조례안 시행으로 확장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음.
- 다음으로, 안 제6조제6항은 상기 시설 및 사업들에 대한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라 여겨짐.

#### 바. 직장어린이집 운영 (안 제7조)

- 안 제7조는,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육아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

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7조(직장어린이집 운영)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상시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일 경우 의무설치 대상<sup>6)7)</sup>으로 소방서의 경우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 여건과 직원복지 증진 향상을 고려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출산을 제고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하겠음.

#### 사.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안 제8조)

- 안 제8조는, 시장에게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심신회복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에 따른 인력·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음.

6)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제8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① 시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앞의 서울시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소방재난본부가 자체 방침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본 조례안 시행 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현장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

##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결과적으로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료됨.
- 다만, 송아량 의원이 2019.1.9.일 동일한 취지로 의안번호 제 317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본 홍성룡 의원안(의안번호 제331호)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